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91
----------	------

제출일자 : 2024. 11. 5.

제출자 : 달성군수



## 1. 개정이유

- 가. 신설된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를 조례에 추가 반영하고자 함
- 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을 인상하여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일부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세분화해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다.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을 정비하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반기별 점검 의무화(안 제6조제3항)
- 나. 신설 파크골프장 명칭과 위치를 추가반영(안 별표 1)
- 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사용료 상한액을 인상하고 사용료를 현실화 및 수요에 따른 사용료의 세분화(안 별표 2, 안 별표 3)
- 라. 사용료의 감면 항목 중 경로대상 연령 기준 조정과 사용료 감면 비율 정비(안 별표 5)

## 3. 조례안 : 따로 붙임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3)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2019. 10. 21.)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4. 10. 4. ~ 10. 24.) 결과 : 의견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시”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로”로 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 중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사람	30%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국 민 체 육 센 터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80	- 수영장, 헬스장
군 민 운 동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697-10	- 축구장, 정구장, 배구장(족구장), 게이트볼장
군 민 체 육 관	달성군 현풍읍 현풍중앙로 130	- 다목적체육관,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생활체육공간
달 성 테 크 노 스포 츠 센 터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수영장, 어린이놀이시설, 다목적강당, 문화강의실
달 성 테 크 노 폴 리 스 생 활 체 육 광 장	달성군 유가읍 상리 971	- 생활체육광장, 통합놀이터
논 공 축 구 장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40	- 축구장(풋살장), 테니스장
구 지 축 구 장	달성군 구지면 내리 840	- 축구장
화 원 테 니 스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58	- 실내테니스장, 실외테니스장
다 사 매 곡 테 니 스 장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842	- 테니스장
현 풍 테 니 스 장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 675	- 테니스장
화 원 게 이 트 볼 장	달성군 화원읍 인흥길 253	- 게이트볼장
다 사 체 육 공 원	달성군 다사읍 다사로 441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히딩크드림필드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야외무대. 산책로
가 창 체 육 공 원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604	-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풋살장, 다목적트랙, 어린이놀이터, 광장, 지압보도
명 곡 체 육 공 원	달성군 화원읍 인흥1길 12	- 인라인스케이트장, X-게임장, 인공암벽, 다목적운동장(축구장)
달 성 스포 츠 파 크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170	- 축구장, 테니스장, 전천후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체육관
화 원 진 천 천 파 크 골 프 장	화원읍 구라리 1400	-파크골프장

명 칭			위 치	주요 시설
논 공 위 천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위천리 648	-파크골프장
논 공 달 성 보 파 크 골 프 장			논공읍 남리 1	-파크골프장
가 창 파 크 골 프 장			가창면 옥분리 778-7	-파크골프장
유 가 한 정 파 크 골 프 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 지 평 촌 파 크 골 프 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옥 포 파 크 골 프 장			옥포읍 간경리 966-1	-파크골프장
현 풍 원 오 파 크 골 프 장			현풍읍 원교리 908-1	-파크골프장
강 변 체 육 시 설	낙 동 강	달 성 강 변 야 구 장	달성군 논공읍 위천리 552-1번지	- 야구장, 선수대기실
		하 빈 지 구 체 육 시 설	달성군 하빈면 봉촌리 1200-3번지	-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금 호 강	금 호 강 변 체 육 시 설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354-1번지	-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 기타체육시설(파크골프장, 다목적트랙 등)

[별표 2]

체육시설 전용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 사용	체육관	주간 (1시간)	50,000	60,000	70,000	8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80,000	100,000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월 70,000 (주 3회)							
			월 60,000 (주 2회)							
			월 50,000 (주 1회)							
	회원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50,000 (주 3회)							
			1일 회원 (2시간)					5,000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40,000		
달성테크노 스포츠센터	다목적 강당	주간 (1시간)	50,000	70,000	50,000	70,000				
		야간 (1시간)	60,000	80,000	60,000	80,000				
가 체 육 공 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살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다 체 육 공 원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히딩크 드림필드풋살 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90,000	120,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120,000	180,000				
명 체 육 공 원	인라인 스케이트장	주·야간	-	-	-	-				
		다목적운동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군민운동장	주·야간	-	-	-	-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논 축 구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풋살장	주간 (1시간)	40,000	50,000	105,000	135,000		
		야간 (1시간)	50,000	60,000	135,000	165,000		
구 축 구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강 변 야 구 장	마사토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인조잔디		65,000	90,000	150,000	200,000		
달 성 스 포 츠 파 크	주 경 기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80,000	120,000	300,000	500,000	
			야간 (2시간)	120,000	180,000	500,000	800,000	
	보 조 경 기 장	축구장	주간 (2시간)	70,000	100,000	200,000	300,000	
			야간 (2시간)	100,000	150,000	300,000	450,000	
	다 목 적 체 육 관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 습 료	단체강습 (1회 1시간)	월 100,000 (주 3회)			-	
				월 80,000 (주 2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20,000 (주 3회)			-	
				월 100,000 (주 2회)				
		개 인 사 용	1일 회원 (2시간)	5,000			-	
				50,000 (주5회)				
월회원 (1개월, 1일 2시간)	40,000 (주3회)					-		
		30,000 (주2회)						
하 빈 지 구 체 육 시 설	야구장	주간 (2시간)	45,000	70,000	90,000	140,000		
	축구장	주간 (2시간)	35,000	50,000	100,000	150,000		
	농구장	주·야간	-	-	-	-		
	족구장	주·야간	-	-	-	-		

구 분	사 용 구 분		체 육 경 기		체 육 경 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실외 테니스장 (가창체육공원, 다사체육공원, 화원테니스장, 다사매곡테니스장, 군민운동장, 현풍테니스장, 달성스포츠파크, 논공축구장 내)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14,000	면당 18,000	면당 28,000	면당 37,000
		야 간 (2시간)	면당 28,000	면당 32,000	면당 55,000	면당 65,000
	단체	주 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20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20,000	-	-	-
실내 테니스장 (화원테니스장)	개인	주 간 (2시간)	면당 35,000	면당 40,000	-	-
		야 간 (2시간)	면당 40,000	면당 50,000	-	-
	단체	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180,000	-	-	-
		야 간 (주1회,1개월, 1일 3시간)	면당 200,000	-	-	-
테니스 강습료	실내테니스장	주 3회	200,000		-	-
		주 2회	150,000		-	-
	실외테니스장	주 3회	150,000		-	-
		주 2회	100,000		-	-
	1일 강습료 (1회 20분)	실내테니스장	20,000		-	-
		실외테니스장	15,000		-	-
비 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li> <li>2. 군(위탁기관 포함)에 등록된 군(민)체육동호회에 대하여는 주간·체육경기에 한하여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한 금액을 징수함.(테니스장 단체사용료는 제외함.)</li> <li>3. 테니스장 단체는 15명, 1개월 기준을 말하며 인원초과 시 1명당 20,000원 추가 징수함.</li> <li>4.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장은 장애인에게 우선사용권 부여</li> <li>5. 테니스장 단체사용의 경우 평일(월~금)만 사용 가능하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li> <li>6. 군민체육관과 다목적체육관 월회원의 경우 종목당 평일(월~금)사용기준이며, 주말(토,일) 및 공휴일 사용은 제한함.</li> <li>7. 군민체육관(체육관, 다목적체육관)과 테크노스포츠센터(다목적강당)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적용시간을 주간(09:00 ~ 18:00), 야간(18:00 ~ 23:00)으로 함.</li> <li>8. 할인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증빙서류)을 등록시 제시하여야 함.</li> </ol>					

[별표 3]

##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 (제11조 관련)

### 1.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회 이용 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 생	유아 초등
수영장 (월)	88,000	62,000	44,000	79,000	57,000	44,000	73,000	52,000	37,000	100,000	62,000	44,000	4,000	3,000	2,000
헬스장 (월)	1개월	주2회(그룹수업)		1회 이용 요금			사물함 (월)		대		중		소		
	50,000	100,000		5,000					3,000		2,000		1,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단체 입장 이용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이용시간

구분	평 일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헬스장	06:00 ~ 21:00	06:00 ~ 18:00	09:00~18:00	휴 관
수영장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고객의 시설별 이용 마감시간은 시설이용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 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5회	주 3회	주 2회	주 2회	주 3회	주 2회	성인	중고생	유아 초등	
수영장 (월)	88,000	62,000	44,000	79,000	57,000	44,000	73,000	52,000	37,000	100,000	62,000	44,000	4,000	3,000	2,000	
체육 문화 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80,000		60,000		50,000		30,000		70,000		50,000		40,000		20,000	
네버랜드 (회)	36개월 이상~10세 이하				8,000				개인사물함(월)				대		중	
													3,000		2,000	
비 고	1. 감면대상자는 대상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확인증) 제시자에 한함. 2. 개인사물함 사용료는 환불이 되지 않음. 3. 수영장 단체입장 할인(30인 이상 10% / 100인 이상 20%) 4. 체육·문화 강습의 강좌료는 강습 특성 및 정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5. 이용 요금은 이용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를 구분함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감면율	대 상
50% 감면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4.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어린이 5. 군수가 놀이시설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감면	1. 어린이 20인 이상 10% 할인

※ 이 조례에서 어린이란 12세 이하를 말한다.

※ 중복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 이용시간

수 영 장	월~금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
		06:00~21:00	06:00~18:00	09:00~18:00

※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말한다.  
 ※ 수영장(샤워장) 이용(퇴실) 시간은 시설 운영시간의 30분 전으로 함.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6조(시설의 개방)</p> <p>① ~ ② (생략)</p> <p>③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그 활용상태를 <u>수시</u> 점검 및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p> <p>[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명칭</th> <th style="width: 33%;">위치</th> <th style="width: 33%;">주요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r> <td>유가한정파크골프장</td> <td>유가읍 한정리 596-1</td> <td>-파크골프장</td> </tr> <tr> <td>구지평촌파크골프장</td> <td>구지면 평촌리 1-43</td> <td>-파크골프장</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생략)</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주요 시설	(생략)			유가한정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생략)			<p>제6조(시설의 개방)</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기별로</u>----- -----.</p> <p>[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3%;">명칭</th> <th style="width: 33%;">위치</th> <th style="width: 33%;">주요 시설</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r> <td>유가한정파크골프장</td> <td>유가읍 한정리 596-1</td> <td>-파크골프장</td> </tr> <tr> <td>구지평촌파크골프장</td> <td>구지면 평촌리 1-43</td> <td>-파크골프장</td> </tr> <tr> <td><u>옥포파크골프장</u></td> <td><u>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966-1</u></td> <td><u>-파크골프장</u></td> </tr> <tr> <td><u>현풍 원오파크골프장</u></td> <td><u>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908-1</u></td> <td><u>-파크골프장</u></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td> </tr> </tbody> </table>	명칭	위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유가한정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u>옥포파크골프장</u>	<u>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966-1</u>	<u>-파크골프장</u>	<u>현풍 원오파크골프장</u>	<u>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908-1</u>	<u>-파크골프장</u>	(현행과 같음)		
명칭	위치	주요 시설																																			
(생략)																																					
유가한정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생략)																																					
명칭	위치	주요 시설																																			
(현행과 같음)																																					
유가한정파크골프장	유가읍 한정리 596-1	-파크골프장																																			
구지평촌파크골프장	구지면 평촌리 1-43	-파크골프장																																			
<u>옥포파크골프장</u>	<u>달성군 옥포읍 간경리 966-1</u>	<u>-파크골프장</u>																																			
<u>현풍 원오파크골프장</u>	<u>달성군 현풍읍 원교리 908-1</u>	<u>-파크골프장</u>																																			
(현행과 같음)																																					

[별표 2]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  
1조 관련)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사용	체육관	주간 (1시간)	(생략)	-	
			야간 (1시간)	(생략)	-	
		다목적강당	주간 (1시간)	(생략)		
			야간 (1시간)	(생략)		
	강습료	단체강습		(생략)		
				(생략)		
			(생략)			
		개인강습 (1회 20분)	(생략)			
	회원권	1일회원 (2시간)	5,000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30,000			
(생략)						
달성스포츠파크	전용사용	주간 (1시간)	40,000			
		야간 (1시간)	50,000			
	강습료	단체강습 (1회 1시간)	월 90,000 (주3회)			
			월 70,000 (주2회)			
		개인강습 (1회 20분)	월 120,000 (주3회)			
			월 100,000 (주2회)			
	개인사용	1일회원 (2시간)	5,000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50,000			

[별표 2]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 상한액(제1  
1조 관련)

구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일	토·공휴일	평일	토·공휴일
군민체육관	전용사용	체육관	주간 (1시간)	(현행과 같음)		
			야간 (1시간)	(현행과 같음)		
		다목적강당	주간 (1시간)	(현행과 같음)		
			야간 (1시간)	(현행과 같음)		
	강습료	단체강습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인강습 (1회 20분)	(현행과 같음)			
	회원권	1일회원 (2시간)	(현행과 같음)			
		월회원 (주5회, 1개월, 1일 2시간)	40,000			
(현행과 같음)						
달성스포츠파크	전용사용	야간 (1시간)	40,000	50,000	60,000	70,000
		야간 (1시간)	50,000	70,000	70,000	90,000
	강습료	단체강습 (1회 1시간)	월 100,000 (주3회)			
			월 80,000 (주2회)			
		개인강습 (1회 20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개인사용	1일회원 (2시간)	(현행과 같음)			
		월회원 (1개월, 1일 2시간)	50,000 (주5회)	40,000 (주3회)	30,000 (주2회)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생 략)						
실외 테니스장 (가장체육 공원다 사체육 공원회원 테니스장, 다사매곡 테니스장, 군민 운동장, 현풍 테니스장, 달성스포 츠평크, 논공축구 장 내)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u>12,000</u>	면당 <u>16,000</u>	면당 <u>24,000</u>	면당 <u>32,000</u>
		야간 (2시간)	면당 <u>24,000</u>	면당 <u>28,000</u>	면당 <u>48,000</u>	면당 <u>56,000</u>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u>150,000</u>	-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u>100,000</u>	-	-	-
실내 테니스장 (회원 테니스장)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u>28,000</u>	면당 <u>34,000</u>	-	-
		야간 (2시간)	면당 <u>34,000</u>	면당 <u>44,000</u>	-	-
	단체	주간 (주1회, 1개월 1일3시간)	면당 <u>150,000</u>	-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3시간)	면당 <u>180,000</u>	-	-	-
테니스 강습료	실내 테니 스장	주3회	<u>180,000</u>		-	-
		주2회	<u>120,000</u>		-	-
	실외 테니 스장	주3회	<u>130,000</u>		-	-
		주2회	<u>75,000</u>		-	-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구 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평 일	토·공휴일	평 일	토·공휴일	
(현행과 같음)						
실외 테니스장 (가장체육 공원다 사체육 공원회원 테니스장, 다사매곡 테니스장, 군민 운동장, 현풍 테니스장, 달성스포 츠평크, 논공축구 장 내)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u>14,000</u>	면당 <u>18,000</u>	면당 <u>28,000</u>	면당 <u>37,000</u>
		야간 (2시간)	면당 <u>28,000</u>	면당 <u>32,000</u>	면당 <u>55,000</u>	면당 <u>65,000</u>
	단체	주간 (1개월, 1일 3시간)	면당 <u>200,000</u>	-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 3시간)	면당 <u>120,000</u>	-	-	-
실내 테니스장 (회원 테니스장)	개인	주간 (2시간)	면당 <u>35,000</u>	면당 <u>40,000</u>	-	-
		야간 (2시간)	면당 <u>40,000</u>	면당 <u>50,000</u>	-	-
	단체	주간 (주1회, 1개월 1일3시간)	면당 <u>180,000</u>	-	-	-
		야간 (주1회, 1개월, 1일3시간)	면당 <u>200,000</u>	-	-	-
테니스 강습료	실내 테니 스장	주3회	<u>200,000</u>		-	-
		주2회	<u>150,000</u>		-	-
	실외 테니 스장	주3회	<u>150,000</u>		-	-
		주2회	<u>100,000</u>		-	-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상한액(제11조 관련)

1. 달성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회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헬스장 (월)	1개월 50,000		주2회(그룹수업) 100,000			1회 이용요금 3,200			사물함 (월)	대 3,000	중 2,000	소 1,000			
비고	1.~4.(생략)														

이용시간 (생략)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수영장 (월)	77,000	54,000	39,000	69,000	50,000	39,000	64,000	46,000	33,000	10,000	54,000	39,000	3,200	2,200	1,600
체육문화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네버랜드(회)	36개월 이상~10세 이하			8,000			개인사물함 (월)			대 3,000	중 2,000				
비고	1.~5.(생략)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생략)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수영장 (월)	88,000	62,000	44,000	79,000	57,000	44,000	73,000	52,000	37,000	10,000	62,000	44,000	4,000	3,000	2,000
헬스장 (월)	1개월 50,000		주2회(그룹수업) 100,000			1회 이용요금 5,000			사물함 (월)	대 3,000	중 2,000	소 1,000			
비고	1.~4.(현행과 같음) 5.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이용시간 (현행과 같음)

2.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사용료

구분	성인 (19세 이상)			중.고생 (13세~18세)			초등 (6세~12세)			유아 (5세이하)	아쿠아로빅 (전체 연령)		1일 이용 요금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5회	주3회	주2회		주2회	주3회	성인	중.고생	유아초등
수영장 (월)	88,000	62,000	44,000	79,000	57,000	44,000	73,000	52,000	37,000	10,000	62,000	44,000	4,000	3,000	2,000
체육문화강좌	어린이 단체강좌						성인 단체강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주2회	주1회	일일특강			주3회
네버랜드(회)	36개월 이상~10세 이하			8,000			개인사물함 (월)			대 3,000	중 2,000				
비고	1~5.(현행과 같음) 6. 유아(5세이하) 강습의 경우 소수 정예반으로 감면 적용 제외														

어린이놀이시설 감면대상 및 기준 (현행과 같음)

이용시간 (생 략)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생 략)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50%	
(생 략)		

이용시간 (현행과 같음)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4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현행과 같음)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중 70세 이상의 노인	30%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2016. 8. 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국민생활 속 반칙·특권 해소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방안」 (2019.10.21.의결)

1.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 ① 체육시설 이용실태(예약현황, 사용현황, 관리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 의무화